

3·1 운동: ‘법정서사’의 탈환 – 피검열 주체의 반식민 정치전략

한기형 (성균관대학교)

19 세기 러시아 사회운동사를 읽으면, 정부와 주의(主義)가 같지 아니한 많은 피고들의 법정에서 행한 연설 내지 행동은 우리가 그에 대한 이해관념을 떠나서라도 다분의 통쾌미를 갖게 하는 것이 있다. 내가 보도하고 경험한 사건 중에서 그러한 통쾌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는 것은 검열상 관계가 될 줄 짐작함으로 말하려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판장에게 경어(敬語)의 사용을 요구하고 자신은 심문(訊問), 기립(起立), 선서(宣誓)를 거부하는 ‘아나키스트’의 공판이라든지 ‘너(お前)’라고 부르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재판장과 대등적 지위를 요구하는 사회주의자의 공판 같은 것을 보도할 때는 일종의 말할 수 없는 통쾌미를 느낀다. 그것은 나의 쓸 데 없는 젊은 용기일는지 모르나 통쾌한 것은 역시 통쾌하다 할 밖에 없다.

(박팔양, 「작은 통쾌」, 『별건곤』 8 호, 1927.8)

1. 제국의 이중성과 속법주의

3·1 운동이 한창 진행 되는 시기, 이 운동의 생생한 추이를 전달한 거의 유일한 한국어 매체는 일본인 다케우치 로쿠노스케竹内録之助가 발행하던 『반도시론』이었다. 이 잡지는 1919 년 4 월호에 「반도강산을 진탕震蕩하는 독립시위운동의 소식」이라는 르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초두에 민족대표 33 인의 이름을 제시한 후, 경성에서 북간도에 이르는 전국 65 지역의 만세운동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글이 3·1 운동에 참여한 한국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3·1 운동을 취재한 『반도시론』 기자는 ‘조선독립만세’, ‘민족자결주의’, ‘사상자 삼백내외 검거자 오천 이상’ 등의 문구를 크게 키워 특별히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케우치가 3·1 운동에 공명의 시선을 보낸 것은 그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무단적 식민통치에 반대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지연장주의’를 주창했다. 그 내용은 ‘제국헌법’의 공유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완전한 국가 통합에 이르자는 것이었다. “세계의 대세와 일선日鮮의 관계에 감鑑하여 조선동포에 대하여 제국헌법을 여與함이 최상방법이라 신信하노라. 조선반도는 현재든지 장래든지 그 영고성쇠榮枯盛衰를 일본과 公共히 할 운명이 유有하니 일본 국민의 향유하는 일체 자유를 조선인에게 여與함을 하등의 모순이 무無하고 당착이 무無하여 극히 순당順當한 조건이라”¹고 그는 말했다. 다케우치는 근대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결여야말로 3·1 운동의 결정적 발발 원인이라 한국인이 표출한 분노의 본질로 이해했다. 그는 한국의 문명이 서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사상적으로 일본인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역설하며 ² 한국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³

‘헌법’의 제공으로 일본인으로서의 ‘주권’을 공인하자는 의견, 말하자면 한국인에게 새로운 ‘내셔널리티’를 부여하자는 다케우치의 생각은 근대 일본 사회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던 근본주의적 영토확장론의 연장선에서

¹ 竹内録之助, 「조선사건의 진상을 논하여 我 정부 及 국민에 望함」, 『반도시론』 1919.4, 6면.

² 竹内録之助, 같은 글, 3면.

³ 동아시아 문명주의의 설파라는 관점에서 3·1 운동 주체들의 인식태도를 살핀 최근의 연구로는 미야지마 히로시의 「민족주의와 문명주의」(『1919년: 동아시아 근대의 새로운 전개』, 3·1 운동 9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논문집,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2009.12.14)를 참고할 것.

이루어진 것이었다.⁴ 그는 한국에서 언론·집회·출판·결사·신교信敎의 자유, 관리등용의 문호개방, 교육제도 개혁 및 종합대학 설립, 근본적 사회정책 수립과 빈민구제 등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일본 정부가 채택한 식민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식민통치 전 기간 동안 진지한 검토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⁵

일본 국적을 부여하여 한국인에게 근대적 기본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다케우치의 논리는 분명 모순된 주권론이었다. 그것은 근대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결사과정을 부정하는 제국체제의 전형적인 팽창논리였다. 그렇지만 3·1 운동이 비헌법적 상황에 대한 저항과 투쟁일 수 있다는 관점이 한국어로 기술된 합법 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다는 것 자체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다.

식민지 사회에서는 공개되기 어려운 그러한 예민한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이 잡지의 발행이 일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⁶ 『반도시론』은 식민지의 법역法域 밖에서 제작되어 식민지 한국으로

⁴ 다케우치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 이경훈은 다케우치가 일본 조합교회와 연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한 바 있다(『학지광』과 그 주변,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출판부, 2006, 374-390면)

⁵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동진의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한길사, 1980)의 제 3 장 ‘참정권문제와 지방제도의 개편’을 참조할 것.

⁶ 『半島時論』의 편집겸발행인은 上野政吉, 사장은 竹內錄之助였으며 발행소 半島時論社의 주소는 ‘東京市 赤坂區 檜町 三番地’, 인쇄소 東京國文社社의 주소는 ‘東京市 京橋區 宗十郎町 十五番地’였다(3 권 4 호 판권지 참조). 중요한 사항은 『반도시론』의 전신이자 역시 다케우치가 사장으로 있던 『新文界』는 한국에서 발행되었으며 신문지 규칙의 저촉을 받았다는 것이다. 『신문계』의 발행겸 편집인은 竹內錄之助, 발행소 新文社의 주소는 ‘京城府 需昌洞 一九六番地’였다. 다케우치가 『신문계』를 폐간하고 『반도시론』을 창간하면서 발행의 ‘법역’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긴 이유는 불확실하다. 추측컨대 청소년 계몽지에서 정치언론으로의 변신을 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다케우치의 1910 년대 출판활동에 대해서는 한기형의 「무단통치기의 문화정책」(『한국근대문학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을 참고할 것.

이입된 도서였다. 그것은 이 잡지의 3·1 운동 관련기사가 제작 과정에서 총독부의 검열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⁷

3·1 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 한국 내부에서 간행된 매체들의 기사 내용은 『반도시론』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주권, 헌법, 기본권 등의 문제와 3·1 운동을 결합시키는 어떠한 표현도 한국 내부에서는 가시화될 수 없었다. 이 차이는 식민지와 제국의 중심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정치적 긴장도의 농담濃淡을 반영하는 현상이었다.

『반도시론』은 ‘삼월 일일 오후 두시 돌연히 조선독립운동의 성聲이 경성을 시始하여 불일내 전반도 삼천리 강산을 전율케(강조-원문)’했다고 썼지만, 정작 식민지의 유일한 일간지 『매일신보』는 이 대사가건이 시작되고 확산되던 수일간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1919년 3월 2일 『매일신보』는 3·1 운동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3월 3일자에서는 ‘봉송고이태왕연구奉送故李太王靈柩’라는 추도문과 고종의 영정 스케치를 함께 실었다. 3월 4일자는 운구과정의 사진과 국장의 과정을 소개했다. 3월 5일자는 3·1 운동과 전혀 무관한 ‘지나문제’ 사실과 ‘덕수궁국장화첩’을 예약판매 한다는 광고가 1면 전체를 차지했다.

『매일신문』에서 3·1 운동 관련기사는 3월 6일 처음 등장한다. 하지만 그 기사는 사건현장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오해’라는 사설이었다. 이 사설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패전국의 식민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밖에 지역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뒤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이어졌다.

⁷ 그러나 『반도시론』은 결국 3·1 운동에 대한 다케우치의 입장 때문에 발행이 중단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기형의 「근대잡지와 근대문학 형성의 제도적 연관」(『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출판부, 2006, 308면)을 참고할 것.

오인(吾人)은 오인(誤認)된 민족자결주의로써 대일본제국의 기초가 진감(震撼)케 되리라고는 신(信)치 아니하노라. 연(然)이나 만일 여차(如此)한 사상에 취(醉)하여 무모(無謀)의 거(擧)를 기도(企圖)하는 자가 유(有)하다 하면 국가의 치안을 보(保)하기 위하여 용서 없는 고압수단을 집(執)하여 근저로부터 차(此)를 절멸(絶滅)할 필요가 유(有)함을 신(信)하노라.

이 경고문의 중요한 특징은 미래형 수사를 사용했다는 점에 있었다. 현실 속에서 민중봉기기 격화되고 있음에도 『매일신보』는 그러한 사건이 현재성을 애매하게 부정했다. 이러한 『매일신보』의 보도로 인해 적어도 3월 6일 현재 3·1 만세운동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었다. 여기에는 미디어 표상체계로 3·1 운동의 실체를 통제·장악하겠다는 총독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되어 있었다.

3·1 운동의 발발에 대한 『매일신보』의 공식적인 인정은 3월 7일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인정도 사실의 보도가 아니라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의 정치성명서인 ‘유고諭告’를 통한 것이었다. 하세가와는 이글에서 총독부가 3·1 운동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식민지인은 3·1 운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도(徒)히 유언(流言)을 전(傳)하고 동포를 환惑(幻惑)하여써 제국의 정밀(靜謐)을 저애(阻碍)코자하는 피불령도배(彼不逞徒輩)의 언론을 경신(輕信)하며 또한 조선과는 전연 관계없는 민족자결이란 어사(語辭)를 착래(捉來)하여 망상을 령(逞)하며 무모한 언동을 감위(敢爲)하여써 치소(嗤笑)를 열국(列國)으로부터 초치(招致)함과 여(如)함은 기가성(豈可誠)할 바 아니리오. 방자(方者) 정부에서는 갈력(竭力)하여 진정(鎮靜)에 시로(是勞)하고 비위(非違)를 감위(敢爲)한 자는 일보(一步)라도 가차(假借)할 바 없이 엄중히 처분중이니 불원간에 침식(寢息)이 될지나 민중도 역시 능히

자제향당(子弟鄉黨)을 보도(報導)하여 구(苟)히 각자 본분을 위배하여 형벽(刑辟)에 저촉함이 무(無)하기를 기(期)할지어다.

하세가와 ‘유고’의 핵심은 ‘형벽(刑辟)에 저촉’이라는 표현 속에 있었다. 3·1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곧 법적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 유고가 나온 이후부터 『매일신보』의 3·1 운동에 대한 보도는 대체로 그 운동 내용이 법적 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공지하는데 모아졌다.

3·1 운동에 대한 사실보도가 처음 이루어진 것은 총독의 ‘유고’가 공포된 그 다음날의 일이었다. 기사의 제목은 ‘각지의 소요사건’이었다. 그것은 『반도시론』이 선택한 ‘독립시위운동’이라는 용어와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른 것이었다. ‘소요’ 곧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일로 규정됨으로써 3·1 운동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질서유지 대상으로 의미화 되었다. 『매일신보』는 사건을 보도하고 그것의 성격을 규명하는 신문기사의 일반적 진행과정과 역전된 기사편집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것은 사건의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그 단정에 의해 사건의 의미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을 뜻했다. 이러한 『매일신보』의 기사에 의해 총독부가 기획하고 구성한 ‘소요사건’이 창안되었다.⁸

3 월 7 일에는 ‘소위독립운동’이라는 사설이 실렸다. 그러나 그것은 하세가와 총독의 ‘유고’를 재해석한 것이 불과했다. 3 월 9 일의 사설 「회고(誨告) 학생제군」, 3 월 13 일의 사설 「조선 소요에 관한 질문서를 독讀함」 등도 대중 선무를 위한 선전물이었다. 이후 ‘소요사건의 후보(後報)’라는 제목 하에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세운동의 상황들이

⁸ 『매일신보』에 게재된 3·1 운동 기사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서는 황민호의 『매일신보』에 나타난 3·1 운동의 전개와 조선총독부의 대응(『한국독립운동사연구』 2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를 참조할 것.

간략하게 제시되기 시작했다. 이 보도기사들은 주로 만세운동의 폭력성과 탈법성을 부각하는데 그 초점이 있었다.

한 달 간에 걸친 『매일신보』의 3·1 운동 보도는 정교하게 기획된 미디어 심리전의 양상을 전형적으로 드러냈다. 며칠간의 침묵과 총독의 ‘유고’, 총독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사설과 만세운동에 비판적인 현장취재로 이어지는 『매일신보』의 태도는 미디어가 사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매일신보』는 만세운동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감추고 사건의 발생을 망언과 유언의 결과로 유도하는 한편, 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실정법의 처분 대상인 점을 강조하여 한국인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했다.

그러한 기획의 최종목적은 3·1 운동 전체를 식민지법의 관리대상으로, 제국의 법체계에 포획된 존재로 재구성하는데 있었다. 1919년 4월 중순부터 『매일신보』의 3·1 운동 보도 초점은 ‘소요사건 판결’에 집중되었다. 죄명과 형량, 죄수 이름이 장황하게 열거되는 수많은 공판 기사들은 3·1 운동의 이미지를 인신 구속된 죄수, 곧 ‘간힌 몸’의 존재로 형상화했다.

탈법한 신체, 국가의 법체계에 의해 교정되어야 할 존재로 3·1 운동이 묘사됨으로써 대중과 3·1 운동의 심리적 거리감이 조장되었다. 『매일신보』 기사 내용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폭민暴民’이라는 용어는 이 신문의 독자들에게 자신이 잠재적인 죄수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매일신보』를 읽는 이들은 그러한 용어를 구사하는 주체에 대한 심리적 공포를 내재화했고 그것은 종종 사회적 좌절감과 제국에 대한 순응에의 의지로 연결되었다.⁹ 3·1 운동의 불법성에 대한 인격화된 유비는 식민권력이

⁹ 박헌호는 이 문제를 식민주의와 근대 정신사의 상관성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했다. 그는 「1920년대 전반기 『매일신보』의 반사회주의 담론연구」(『한국문학연구』 29, 2005)에서 『매일신보』가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운동가를 왜곡 선전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혐오를 광범하게 조성했음을 논증했다.

창안하고 실천한 심리조작체계의 산물이었고, 근대 한국인에게 법과 국가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각인시킨 주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

3·1 운동에 대한 『반도시론』과 『매일신보』 두 매체의 시각 차이는 이 매체들의 운영주체가 가지고 있던 관점과 정책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 편차를 보다 결정적인 것으로 고정한 요인은 간행물이 처했던 ‘법역’의 차이와 식민지 이중법의 영향이었다.¹⁰ 식민지에서 출판관련 법률은 현실에 대한 매체의 표현 수위를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제한하였다. 예컨대 『개벽』은 신문지법에 의해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지법 5 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시사와 정치’를 다룰 수 있는 권리가 2 년간이나 제한되었다.¹¹ 『개벽』이 초기부터 문학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던 것은 이러한 법적 환경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식민권력은 근대적 합법성의 주관자로서 문체와 표현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¹²

‘법역’의 차이는 곧 제국 일본의 판도 안에서 합법적 표현의 가능성이 다양하게 위계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예컨대 일본 본토에서는 3·1 운동과 관련된 정치담론의 일정한 공개가 허용되었지만 식민지에서 그러한 유연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근대적 텍스트의 생산에서 제국의 중심과 변방이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¹⁰ 『반도시론』과는 달리 『매일신보』는 한국 내 신문지법의 규정을 받았다(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 1990, 378 면). 출판과 관련된 식민지 이중법의 성격에 대해서는 최기영의 「광무신문지법연구」(『대한제국기 신문연구』, 일조각, 1991), 정근식의 「식민지 검열의 역사적 성격」(『사회와 역사』 64, 2003), 김창록의 「일제 강점기 언론·출판법제」(『한국문학연구』 30, 2006)을 참조할 것.

¹¹ 한기형, 「문화정치기 검열정책과 식민지 미디어」, 『근대를 다시 읽는다』 2, 역사비평사, 2007, 190 면.

¹² 이 문제에 관한 필자의 초보적인 문제의식은 「근대어의 형성과 매체의 언어전력」(『문예공론장의 형성과 동아시아』, 성균관대출판부, 2008)을 참고할 것.

제국정치의 산물인 이러한 텍스트 생산 메커니즘의 지역 간 편차를 필자는 ‘속법주의屬法主義’라는 비유적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식민지의 합법 출판물들은 특히 그러한 ‘속법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식민권력의 통치정책은 ‘법’이라는 매개항을 통해 출판물의 표현 수위를 조절했다. 식민지의 텍스트들은 국가의 과도한 규정력 속에 갇혀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민지 출판물의 ‘속법주의’는 1920 년대의 사회주의 관련 잡지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국내에서 간행된 『아성』, 『공제』, 『신생활』, 『개벽』, 『조선지광』과 일본에서 간행된 『예술운동』, 『이론투쟁』, 『사상운동』, 『현계단』, 『무산자』 등은 검열수준에서 가혹할 만한 차이를 드러냈다. 그것은 적용되는 법의 차이가 출판물의 내용과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¹³ ‘법역’의 차이에 따라 검열 강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유통되는 지식/정보의 내용이 변화되는 연쇄현상은 지식/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 분열과 대립의 체계로 제국을 운영하려는 일본의 국가정책 산물이었다. 이러한 정책이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야기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제국-식민지’ 관계의 역사적 연구에서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이다.

2. 기억의 표상과 법역의 편차

3·1 운동은 국내외에 걸쳐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서사자원을 만들어냈고 실제로 여러 주체들에 의해 기념과 평가, 학술 조사와 저술, 예술창작과 공연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운동은

¹³ 그러나 그 차이로 인해 일본에서 한국어 사회주의 문헌 간행이 절대적으로 용이했던 것은 아니었다. 『현계단』 2 호(1929.4) ‘編輯餘戰’은 1928 년 8 월 창간호 간행 이래 수차례의 원고압수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식민지인이 제국의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 식민지인이라는 인위적 굴레, 그 즉자적 조건으로부터 걸어 나와 스스로 주체적 근대인으로써의 신원증명을 수행한 사건이었다. 한 사회집단 전체가 함께 추진한 그러한 자발적 존재전의 경험은 쉽게 지워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대국가의 주권, ‘제국-식민지’ 관계, 근대인의 기본 가치, 민족성에 대한 공동감각 등에 대한 숭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확산과 재귀를 반복하며 순환적 자기 증식의 체계를 만들어왔던 그 총체적 내용 전체가 3·1 운동의 역사화 과정이었다.

그런데 3·1 운동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이 운동이 한국인의 발화 욕망, 즉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자의식을 생체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대한독립만세’와 같은 비합법의 언어가 자신을 수인囚人의 상태로 전락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심각한 사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태도야말로 3·1 운동이 만들어낸 인식의 혁명성이었다. 3·1 운동이 근대문학뿐만 아니라 근대언어 전반의 새로운 주형을 만든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면 바로 그러한 발화 욕망이 인신 구속의 공포라는 임계점을 돌파한 점 때문일 것이다. 3·1 운동이 ‘불온문서’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했다는 사실이 그 점을 역사적으로 증명한다. 3·1 운동 당시 국내외 각지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된 여러 편의 독립선언서, 요망서, 격문류의 존재는 3·1 운동이 촉발한 심각한 표현욕망의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¹⁴

하지만 ‘불온문서’와의 밀접한 관계가 암시하듯, 일본이 제국으로 존재하던 시간 동안 제국의 ‘법역’ 내에서 3·1 운동의 역사화 과정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3·1 운동이 일제의 한국지배에 대한 부정과

¹⁴ 姜徳相 編, 『現代史資料』 가운데 『3·1 運動編』 2, みすず書房, 1967

거부의 담론을 생산해 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3·1 운동에 대한 당대의 직접적인 평가와 해석은 대체로 제국의 판도 밖에서 이루어졌다.

상해에서 간행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3·1 운동의 실체 폭로와 그 역사화 과정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던 매체였다. 이 신문은 논설, 보도기사, 소설, 시, 수기, 사진 등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해 제국의 영역 안에서 공개될 수 없었던 3·1 운동에 관한 다수의 정보와 견해를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제출했다.

청년의 흥분에 올라서서 군도로 그 신체를 난자하던 일본 천황폐하의 순사는 청년의 생명을 완전히 파괴한 줄 알고 노(怒)하는 듯이 따라 내려와 주위에 선 일군(一群)을 향하여 청년의 열혈(熱血)에 젖은 칼을 내어 두른다. 그의 구두와 바지에는 청년의 피가 흐르고 그의 눈은 마치 독사와 같이 되었다. 이 독사는 독사의 혀와 같이 불게 피 묻은 군도(軍刀)를 내어 두르면서 황단(黃壇) 앞으로 쫓기는 여학생의 일군을 따라 앞서고 말았다. 실로 인류의 역사에 두 번 보지 못할 광경이라.¹⁵

소설 「피눈물」(1919.8.28-9.27, 11 회)은 ¹⁶ 3·1 운동의 와중에 일어난 거리의 함성과 잔혹한 살육을 동시에 포착했다. 국내에서는 소문과 후일담, 옥중기라는 간접화된 형태로 밖에 그려질 수 없었던 ¹⁷ 3·1 운동의 실체가 현장성에 근거해 생생하게 묘사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 작품이 상해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1919 년 10 월 4 일, 『독립신문』은 ‘만세 부른 죄로’라는 설명과 함께 칼로 난자된 인물의

¹⁵ 忍月, 「피눈물」(9 회), 『독립신문』 1919.9.20

¹⁶ 이 소설의 1,2 회는 자료가 망실되어 3 회분부터 남아있다(한국학자료원 편, 『상해 독립신문』 증보판, 2004).

¹⁷ 3·1 운동을 배경으로 한 두 편의 소설, 심훈의 「찬미가에 싸인 원혼」(『신청년』 3, 1920.8)과 김동인의 「태형」(『동명』 1922.12-1923.4)이 감옥을 통해 3·1 운동을 간접화한 것은 검열로 인한 표현의 제한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얼굴 사진을 게재했는데, 소설 「피눈물」은 이 사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사실성으로 3·1 운동을 묘사했다.

1920 년 3 월 1 일, 『독립신문』은 사설 「삼일절」, 송아지, 김여金興, 유영柳榮이 쓴 세 편의 기념시, 독립선언서 전문과 「기념일에 당하여 동포에게 드리는 문」 등을 게재하였다. 불과 일 년 만에 등장한 ‘절節’이라는 표현은 3·1 운동에 대한 공동 기억의 요구가 얼마나 광범하고 강력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설은 “기미 삼월 일일, 대한의 독립을 선언한 날. 그날 오후 두시, 옥탑공원에서 처음 대한독립만세 성聲이 발한 때. 이날 부활의 날, 이 때 부활의 때”라고 선언했다. 김여는 시 「삼월 일일」에서 “천만번 다시 죽어도/ 독립은 하고야 말리라/ 윈 천하 다 막아도/ 독립은 하고야 말리라/ 삼천리 피우에 뜨고/ 이천만 하나도 안 남아도/ 독립은 하고야 말리라/ 하고야 말리라”고 소리쳤다.¹⁸ 이들의 언어에서 3·1 운동은 죽음을 밀어내고 재생을 쟁취한 사건으로 파악되었다. 발생 1 주기를 맞아 3·1 운동에 대한 기억투쟁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1920 년 3 월 17 일, 『독립신문』은 「상해의 3·1 경축일」에 운집한 군중을 담고 있는 두 장의 사진이 실었다. 2 주기인 1921 년 3 월 1 일, 『독립신문』은 ‘독립선언서’와 ‘공약삼장’, 3·1 운동 당시 시위 사진, 3·1 절과 청산리전투의 관계에 대한 논설 등이 게재했다. 1923 년 3·1 절 특집은 ‘국민대표회의 주최 순국제현 추도회’ 기사와 여러 편의 추도문, 추도시로 구성되었다. 1920 년 ‘삼일절’에서 1923 년 ‘순국제현추도’로의 의미 확대 과정을 통해 『독립신문』은 3·1 운동을 한국인 모두의 국가적 제의로 만들어갔다.

¹⁸ 김여의 본명은 金興濟이다. 김여제의 생애와 작품 활동에 대해서는 정우택의 「「만만파파식적」의 시인 김여제」(『한국근대시인의 영혼과 형식』, 깊은샘, 2004)를 참고할 것.

1919 년 12 월, 상해에서 간행된 『신한청년』은 잡지 한 권 전체를 오직 3·1 운동을 기록하고 기억하는데 바쳤다.¹⁹ 잡지의 구성은 ‘기미독립선언서’를 비롯한 각종 선언서와 청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 3·1 운동 당시 일어난 일본헌병의 학살내용과 그 자료들, 해외 각국 언론들이 타전한 3·1 운동 관련 기사들로 구성되었다. 『신한청년』의 창간사는 3·1 운동을 통해 스스로 국민적 생존권을 자각하였고 세계인류로 하여금 한국인의 국민적 생존을 확신케 하였다고 선언했다. 또한 「편집여언」은 “독립선언서 이하의 제諸 기록은 실로 우리 부활하는 대한 국민의 국민적 이상을 발현한 것이니 이는 亘(亘) 만세萬歲히 우리 국민생활의 주의가 되고 표준이 될 것이라”고 자료 소개의 의미를 정리했다. 『신한청년』의 사례를 통해 3·1 운동이 발생 직후부터 국민과 국가의 강력한 호명 기제로 이해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3·1 운동은 항일투쟁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기원적 사건으로 의미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국내외의 여러 운동단체들은 3·1 운동의 권위를 빌어 자기 행위의 가치와 의미를 선전했다. 3·1 운동 10 주기인 1929 년 3 월, 3·1 운동과 관련된 비합법 문서의 처분건수가 식민지 전 시기를 통해 최고 상태로 증가했다.

조선 내 검열 자료의 수합과 정리를 총괄하는 『朝鮮出版警察月報』 제 7 호(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발행, 1929.3)에는 3·1 운동과 관련한 15 건의 차압 자료가 일본어로 번역 수록되었다. 11 건은 격문(뼈라)이었으며,

¹⁹ 『신한청년』의 주필은 박은식과 이광수, 발행주체는 신한청년당이였다. 국문판은 1919 년 12 월 1 일, 중문판은 1920 년 2 월 3 일 발행되었다.

4 건은 간도에서 발행된 『민성보』의 기사내용이었다.²⁰ 격문의 발행지는 10 건이 중국, 1 건이 타이완이었다. 그 가운데 10 건이 한국어를, 1 건이 중국어를 사용했다. 이들 격문들은 대부분 격렬한 반제국주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컨대 ‘상해 한국여자구락부’가 발표한 ‘삼일운동 10 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친애하는 이천삼백만 형제자매여! 오늘은 삼일운동 십주년 기념일이다.
오늘부터 10 년 전 3 월 1 일은 우리 민족이 저 동해 섬 중에 있는 강도
왜노(倭奴)에 우리들의 자유와 토지를 전부 빼앗겨 진실로 무수한
치욕을 받음에 통분에 넘치는 눈물로써 십주년을 지내 왔으나 이제 전
민족 총동원으로 우리들의 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선언함과 동시에
3·1 운동이 강도 노예들을 향해 장쾌한 전쟁을 일으킨 날임을 기억하자.

해외에서 3·1 운동에 대한 사실기록과 일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었던 것과는 달리 한국사회 내부에서 이 대사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재검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것은 3·1 운동에 대한 직접적 발화의 권한이 전적으로 식민권력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1 운동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문제에 대해 식민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내의 표현주체는 존재할 수 없었다.

3·1 운동에 참여했다 구속되었던 심훈은 1920 년 3 월, 자신의 일기에 3·1 운동 1 주기를 맞이하는 소회를 이렇게 적었다. “오늘이 우리 단족(檀族)이 전前 천년 후後 만대에 기념할 삼월 일일!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과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세계만방에 선언하여 무궁화 삼천리가 자유를 갈구하는 만세의 부르짖음으로 이천만의 동포가 일시에 분기

²⁰ 『민성보』의 기사성격에 대해서는 류진희, 「식민지 검열장의 형성과 그 안의 밖: 『朝鮮出版警察月報』에 있어 ‘支那’라는 메타범주」(『대동문화연구』 72, 2010)를 참고할 것.

열광하여 뒤끓던 날! 오 삼월 일일이여! 사천 이백 오십 이년의 삼월 일일이여! 오! 우리의 조령祖靈이시여, 원수의 칼에 피를 흘린 수만의 동포여, 옥중에 신음하는 형제여, 천 팔백 칠십 육년 칠월 사일 필라델피아 독립각獨立閣에서 울려나오던 종소리가 우리 백두산 위에는 없으리이까? 아! 붓을 들때 손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도다.“²¹ 그러나 이 열렬한 심훈의 문자는 그 자신의 은밀한 일기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3·1 운동에 대한 한국인의 체험이 합법적으로 발표되기 위해서는 기억의 내용과 주체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1920 년대를 대표하는 종합잡지 『개벽』이 3·1 운동을 처음으로 다룬 것은 3 주기인 1922 년 3 월호(통권 21 호)에서였다. 『개벽』이 천도교의 간행물이고 3·1 운동에 천도교 교주 손병희가 핵심인물로 참여했음에도 3 년이 지나도록 3·1 운동에 대해 『개벽』이 거의 아무런 언급도 하지 못했던 것은, 3·1 운동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민감성을 지닌 사건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그 즈음 『개벽』은 ‘정치시사’를 게재할 수 없는 신문지법 5 조의 유보조항을 벗어나기 위해 총독부와의 교섭을 시작했다.²² 따라서 3·1 운동에 대한 『개벽』의 접근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개벽』은 ‘한샘(최남선)’의 이름으로 「세 돌」이라는 조시를 게재하여 3·1 운동에 대한 추모의 예를 갖추었다. 이 시는 이렇게

²¹ 『심훈문학전집』 3, 탐구당, 1966, 600 면.

²² 「사회일지」, 『개벽』 22 호(1922.3. 83 면) ‘『개벽』과 언론확장책’ “신문지법에 의하여 종래 삼개 성상을 계속 간행된 『개벽』지는 그 언론의 범위를 更 일층 확장코자 당국에 교섭하여 정치시사의 보증금으로 삼백 원 납부의 수속을 완료하다.” 「사회일지」 문두에 ‘아직 형편에 의해 정치적 시사를 略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정치시사의 게재가 아직 허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개벽』이 ‘정치시사’의 게재를 허락받은 것은 1922 년 9 월인데, 이 때 『개벽』과 함께 『신천지』, 『신생활』, 『조선지광』이 신문지법 간행의 허가를 받았다.

시작한다. “원 울을 붉혀 노신 끔찍한 임의 피가/ 오로지 이내 한 몸 잘 살라 하심인줄/ 다시금 생각하고 고개 숙여 읊니다.” 이 모호하고 은유적인 시가가 3·1 운동 3 주기를 기념하는 『개벽』의 유일한 형식이었다. 정치적인 문제를 게재할 수 없다는 『개벽』의 신문지법 발행 조건이 3·1 운동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개벽』의 태도는 식민지에서 검열 통제가 출판 당사자들에게 어떤 수준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치시사’의 금지가 해제된 1923 년부터 3·1 운동에 대한 『개벽』의 발언은 조금씩 확대되었다. 4 주기 기념호(33 호, 1923. 3)는 3·1 운동을 기억하는 네 편의 글을 실었다. 그러나 3·1 운동에 대한 묘사의 수위는 달라지지 않았다. 최린은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모년 3 월 1 일에 신체의 구속을 받아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로 말하면 천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계 외의 세계, 사회 외의 사회인 소위 감옥에서 절대 부자유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²³ 최린의 발언은 3·1 운동의 의미가 사회적인 맥락에서 공식적으로 기술되는 것이 당대에 불가능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윤재 역시 3 월의 역사와 풍속문화를 설명하는 글에서 ‘오년 전 일일은 조선독립운동이 기거하였고’²⁴ 한 구절로 살짝 3·1 운동을 끼어 놓았다. 이 한 구절을 살리기 위해 이윤재는 3 월과 관련된 장황한 역사 사례를 찾고 풀어놓은 것이다. 박달성은 탐동공원 방문기를 쓰고 그 속에 “팔각정아 기억하겠느냐? 그 때의 그 일을”이라는 우회적 방식으로 3·1 운동을 상기시켰다.²⁵

²³ 최린, 「생각나는 대로」, 『개벽』 33 호, 1923.3, 70 면.

²⁴ 이윤재, 「금년 삼월과 우리의 과거」, 『개벽』 33 호, 1923.3, 72 면.

²⁵ 박달성, 「봄을 맞는 탐동공원」, 『개벽』 33 호, 1923.3, 77 면.

3·1 운동 7 주기인 1926 년 3 월, 박달성은 「그해 그달 그날 그때」라는 서간체 수필을 『개벽』에 기고했다. 3·1 운동에 연루되었다가 일찍 돌아간 K형을 회고하면 그에게 바치는 조사의 형태로 작성된 이 서간문에서도 3·1 운동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적 체험으로 그려졌다. 박달성은 이렇게 말했다. “K형! 그 뒤 형은 읍에서 그 일을 맞이하고 나는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형은 그 일로 인해서 3 년 동안 옥중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병을 얻어 불귀의 객이 되지 않았습니까?”²⁶

이러한 사적인 언어들, 그것이 『개벽』을 통해 기록된 3·1 운동의 내용이었다. 존재했던 그대로의 사실을 표현하고 반추하는 대신 특별한 기호의 교환을 통해 기억의 공유를 확인하는 수사학은 체험을 같이한 자들끼리의 비밀스러운 제의祭儀의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修辭 관행은 3·1 운동만이 아니라 식민권력과 대립의 위험 때문에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일들 전체에 적용되었다. 표현의 욕망과 그 불가능성 사이의 모순은 식민지인의 발화방식과 언어체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²⁷

3·1 운동에 대한 객관적 묘사나 사실적 표현은 금지의 대상이었으나, 그 학술적·역사적 해석의 공개는 1924 년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허용되었다. 3·1 운동에 대한 구체적 기억의 표현은 합법화될 수 없었지만 추상적 역사화라는 간접기술은 인정된 것이다.²⁸ 『개벽』 지면에서 3·1 운동의 역사적 해석을 시도한 최초의 인물은 문일평이었다. 그는 종교의 협력과

²⁶ 『개벽』 67 호, 1926. 3, 97 면.

²⁷ 식민지 검열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식민지인의 표현 욕망과 식민권력의 억압 사이에서 발생한 이러한 다층적 문제가 야기한 다양한 현상의 추적과 해명에 그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²⁸ 안석주가 그린 「갑자년 중 24 대사건」(『개벽』 54 호, 1924.12, 26-31 면) 가운데 ‘3 월 1 일 기념(3 월)’ 만평은 ‘국경에서 齋藤 저격(5 월)’ 西鮮 水災(7 월), ‘南鮮 旱災’(8 월)와 함께 삭제되었다.

여성의 참여라는 두 가지 현상에 주목하고 정치와 문화 방면에서 ‘민족적 자아’를 찾기 위한 각성운동으로 3·1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규정했다.²⁹

하지만 3·1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대두와 함께 민족주의자들의 관점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역사적 위치를 부여받기 시작했다. 이성태는 「A 와 B 의 문답」을 통해 3·1 운동과 사회주의 혁명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3·1]운동의 결과는 정치적 요구나 사회제도에는 변혁이 없었지만 조선인 급(及) 세계의 약소민족에게 다대한 교훈을 주었다”는 문장에서 사용된 ‘교훈’의 의미를 답하는 형식으로 3·1 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 하나는 정치적 권리의 탈취국가, 정복국가의 정복의 동기에 대한 명확한 사실은 인식했다 함이오, 또 둘째는 약소민족의 ××[혁명]은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적어도 이 모양으로 해서는 성공치 못한다는 경험을 얻었고, 셋째는 ××[혁명]의 목표는 어디 있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깨달았다는 것일세.”³⁰ 이성태는 이 글에서 3·1 운동의 가치가 제국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국한되어 있을 뿐 사회주의 혁명의 방법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했다.³¹

²⁹ 문일평, 「갑자 이후 육십년간의 조선」, 『개벽』 43 호, 1924.1, 129 면.

³⁰ 動觀生(이성태), 「A 와 B 의 문답」, 『개벽』 57 호, 1925.3, 42-43 면.

³¹ 사회주의자들의 3·1 운동관은 해방직후에 보다 명료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조선과학자동맹이 간행한 『조선해방과 3·1 운동』(청년사, 1946. 3)의 권두언은 3·1 운동 지도부의 계급적, 사상적 한계를 지적한 후 노동자·농민의 전위에 의해 3·1 운동의 역사성이 계승되었다고 주장했다. “3·1 운동의 피의 기록=실패의 기록은 이들(노동자·농민의 전위-인용자)에게 위대한 교훈이 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의 해계모니를 과거의 타협적 개량주의자의 손으로부터 戰取하여 노동자 농민의 동맹을 주축으로 한 광범한 조직적 투쟁을 승리 획득의 최고 전략으로 삼고 일본제국주의의 타도와 봉건적 제유제의 청소를 민족적 당면과업으로 하였던 것이다. (중략) 3·1 운동의 진정한 실천자는 누구였으며 또 혁명정신의 진정한 계승자는 누구였는가 하는 사실은 이로써 명백하다. 3·1 운동을 기념함에 際하여 우리는 敵刀에게 희생된 혁명투사에게 敬弔의 意를 표하는

이러한 역사적 해석들은 그 필자들이 지녔던 세계관에 의해 상호 이질적인 3·1 운동관을 구성했다. 그러나 3·1 운동이 어떤 특정한 역사해석의 지평 속에 편입되는 순간 3·1 운동이 함유하고 있던 카오스적 폭발력, 그 막대한 잠재성은 왜소해지거나 위축되었다. 사회주의자들이 3·1 운동에 대한 명료하면서도 날카로운 해석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3·1 운동이 사회주의 혁명의 부분적 과정으로 해소되는 것이었다. 충분한 묘사와 설명이 결여된 사상과 이념의 해석, 그것은 어떤 점에서 3·1 운동을 이론과 관념의 영역에 묶어두려고 한 제국의 정책을 자각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었다.

3. 법정서사의 역사적 맥락

식민지 사회에서 3·1 운동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대부분 식민통치기관에 의해 만들어졌다. 조선총독부와 조선군 사령부가 생산한 각종 비밀문서, 관련자들의 심문과정에서 기록된 피의자 조서, 총독부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 등이 그러한 자료들이다.³² 그런데 판결문 가운데 일부가 신문에 번역 게재되고 공판내용이 방청기의 형태로 소개되면서 판방문서 중심의 3·1 운동 기록물에 새로운 맥락이 추가되었다. 총독부는 식민지인에 대한 선무를 목적으로 판결문과 공판기의 공개를 허용했다. 그런데 이 두 형식의 3·1 운동 기록이 조선어 신문에 발표되면서 3·1 운동에 대한 기억의 방식에 전체적인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현하의 혼란한 정세 하에서도 참다운 민주주의적 민족해방운동이 급속히 성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우리의 결의를 굳게 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사회주의자들이 소지한 특정한 진화론적 시간단계에 3·1 운동을 고정함으로써 이 운동의 전체상과 지속적인 의미화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축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³² 3·1 운동과 관련된 일제 관헌자료의 성격에 대해서는 姜德相이 편집한 『現代史資料』 가운데 『3·1 運動編』 1.2(みすず書房, 1967)를 참조할 것.

3·1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문의 번역 게재는 『매일신보』가 처음 시작하였다. 1919 년 8 월 이전에는 피고인 이름, 형량, 적용법규의 내용만을 알리는 짤막한 공판기사가, 8 월 이후부터는 예심결정서의 부분 혹은 전문 게재가 일반화되었다. 『매일신보』의 판결문 게재는 3·1 운동에 대한 총독부 대응의 법률적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19 년 8 월 3 일,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 판사 나가시마 무사시永島武藏의 이름으로 작성된 만세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경성지방법원의 ‘예심종결결정서’를 게재했다. 그 제목은 ‘손병희 등 47 인 예심종결, 내란죄로 결정’이었다. 8 월 8 일과 8 월 10 일에는 ‘수원사건’과 ‘안성사건’의 예심결정서가 공개되었다. 9 월 7 일부터는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예심결정서가 5 회에 걸쳐 연재되었고, 9 월 14 일부터 출판법, 보안법 위반 피고인들의 예심종결결정서가 4 회 게재되었다. 그리고 1920 년 3 월 23 일부터 4 월 14 일까지 8 회에 걸쳐 고등법원의 ‘손병희 일파 예심결정서’가 발표되었다.³³

3·1 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예심결정이 이루어진 1919 년 8 월부터 1920 년 3 월까지 근 7 개월간 『매일신보』는 예심 판결문의 형식으로 3·1 운동을 재현했다. 판결문은 전적으로 일본 제국의 공식적 국가언어였고 『매일신보』는 그 국가의 언어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메신저였다. ‘국가언어=판결문’의 절대화, 그것은 문화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3·1 운동에 대해 『매일신보』가 취했던 기본적인 태도였다. .

³³ 3·1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일제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장신의 「삼일운동과 조선총독부의 사법대응」(『역사문제연구』 18, 역사문제연구소, 2007)을 참조할 것.

БЪЛГАРИЯ И КОРЕЯ, 2012

우 피고 등에 대한 출판법 급(及)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예심을 행한 바 피고 등은 대정 팔년 이월 중에 공모하고 제국 영토의 일부분인 조선을 제국의 통치로부터 따로 떼어내어 그 지역으로써 별도로 독립국을 건설코자 목적하고 먼저 조선인에 대하여 그 평화의 작란을 선동하고 또한 조헌(朝憲)을 문란케 한 불온한 서류를 공표하여 써 각 지방에 조선독립운동을 개시하고 그 뿐 아니라 또 그 독립운동은 드디어 폭동이 되기에 이를 줄을 미리 짐작하고도 그와 같은 각종의 행동을 행하여 처음의 목적으로 도달코자 하여 선언서를 돌리고 조선인은 자유의 민족이고 조선인은 독립국이라 하여 원 조선민족은 서로 응하여 최후의 일각 최후의 한 사람이 남기까지 독립을 완성하도록 노력치 아니치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문서를 많이 인쇄하여 동년 삼월 일일 이후로 널리 이것을 조선 각지에 배포하여 써(하략)³⁴

제국의 통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과정의 하나로 작성된 3·1 운동 판결문은 총독부의 의도를 충실히 대변했다. 총독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국 질서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했다. ‘선동, 문란, 불온, 폭동’ 등의 부정적 언사로 점철된 3·1 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판결 내용은 총독부의 법정이 애초부터 객관적인 심판의 의도가 없었음을 드러냈다. 3·1 운동 주동자들은 제국의 안위를 위해 희생되어야 할 존재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다.

군사지휘권, 행정권, 사법권이 총독의 권력 아래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던 식민지 한국에서 법률이 총독부 행위의 합리화를 위해 동원되는 것은 극히 일상적인 일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의 법정에서 작성된 3·1 운동 관련자 판결문을 법정에서 끌어내 번역어의 형태로 한국어 신문에 게재했고 그러한 행위는 3·1 운동에 대한 해석의 배타적 권리가 총독부에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었다.³⁵ 그런 점에서 위의 판결문은

³⁴ 『매일신보』 1919.8.3, ‘손병희 등 47인 예심종결, 내란죄로 결정’

³⁵ 현재까지도 총독부가 작성한 법률자료가 3·1 운동을 기억하거나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자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각종 심문조서, 판결문과 같은 식민지 법정에서 생산한 자료를 통하지 않고 3·1 운동을 재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총독부의 자기 정당화를 위한 ‘법정서사’의 하나였다. 판결문이 범죄사실을 논죄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 통치정책의 선전 수단으로 변용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맥락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매일신보』가 게재한 3·1 운동 판결문은 제국의 ‘법정서사’였지만, 한국 근대 매체언어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계보학적 연관 속에 있었던 현상이었다. 『매일신보』 판결문을 선행했던 ‘법정서사’ 양식은 『대한매일신보』의 공판기였다. 이 두 매체언어는 근대의 법정이 생산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갖지만 서사화 방식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다. 『매일신보』 판결문이 국가의 언어였다면 『대한매일신보』 공판기는 수인囚人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대한매일신보』(국문판)는 「배설공판기」(1908.6.20-8.7, 41 회), 「려순통신」(1910.2.8- 3·1, 16 회), 「리재명의 공판」(1910.7.2-7.13, 9 회) 등 세편의 연재기사를 통해 ‘공판기’라는 ‘법정서사’의 형식을 확립했다.³⁶ 근대 신문이 재판과정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빈번한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매일신보』의 공판기는 국가 위기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기술記述 대상으로 선택하고 재판과정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통해 피고를 범법자로 규정한 법의 부당성을 공격하여 일반적인 재판기사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드러내었다.

일이다. 심문조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탐구당, 1991)의 3·1 운동 부분과 이병현의 『3·1 운동비사』(삼일동지회, 1966) 등에 일부 자료가 번역되어 있다. 그 밖에 「법정에 현출한 독립사건의 경과」(조선출판협회 편, 『조선병합십년사』, 유문사, 1923)도 3·1 운동 관련 ‘법정서사’에 대한 당대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자료적 도움을 준다.

³⁶ 세 편의 분량은 200 자 원고자로 환산하여 총 650 매 가량이다. 이들 공판기는 국한문판에도 함께 실렸다. 제목은 「裴說氏 公判顛末」(1908.6.20-8.7, 41 회), 「旅順通信」(1910.2.8-2.26, 13 회, 중간에 「安重根의 公判」, 「安禹兩氏 公判 審問에 대한 陳述의 詳報」 등으로 제목이 달라짐), 「李在明公判」(1910.5.14-5.18, 8 회)이다. 국문판과 국한문판의 내용 비교검토를 포함해 이 자료들에 대한 성격분석은 별도의 논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한매일신보』는 공판기를 통해 통감부와의 합법적 대립의 가능성을 실험했다. 공판기는 국가의 법률행위를 사회적으로 전파하는 매개체였기 때문에 그것이 잠재적 불온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불온성을 증명하거나 제재할 방법을 찾기는 쉽지 없었다. 구한말의 정치금지 상황이 반제국적 불온성이 내장된 서사형식의 창출을 재촉한 것이다.³⁷

『대한매일신보』 공판기는 통감정치와 보호국이라는 용어로 상징되는 대한제국의 위기국면에서 내셔널리즘의 환기 효과를 창출했다. 현존하는 ‘국가-법-수인’의 관계 질서가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라면 무엇이 그것을 대신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대한매일신보』 공판기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민족의 법정’을 격렬한 결여의 형상으로 상상하게 만들었다.

여순旅順의 재판정에서 안중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로일전쟁 당시에 일본 황제의 선전조치 중에 말하기를 한국의 독립을 부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한다 한 고로 한국의 일반 인민이 감격하여 일본 군대가 승진하기를 축수하여 수 천리 먼 길에 군량과 군미를 수운하여 주며 도로와 교량을 수축하여 주고 로일 양국의 강화가 성립된 후에 일군이 개신가를 부르며 돌아 올 때에 한국인이 제 나라의 군사가 개선하여 돌아오는 것 같이 환영하여 이후로는 한국의 독립은 견고한 줄로 확신하였더니 의외에 이등이 대사로 한국에 와서 매국적 일진회 두령 몇 놈을 돈을 다수히 주고 사서 소위 선언서를 발표케 하고 또

³⁷ 1909 년 당시 ‘치안방해’에 의한 신문지 압수는 다음 8 개항(내부 경찰국 발행, 『경찰사무개요』)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1. 국권회복의 名을 藉하여 일본 보호를 반대하여 反旗를 掲함을 고취한 자. 2. 일본의 보호를 目하여 한국을 병탄함이라 誣하여 일반 韓人의 반감을 起한 자. 3. 無根의 流說을 傳하여 人心을 惑亂케 하고 又는 事를 과대히 포장하여 국민을 분개케 하여 官의 시설을 妨碍하고 社會의 질서를 교란한 자. 4. 국권회복은 국민의 공동 일치를 요한다 하여 단체의 조직을 장려한 자. 5. 국권회복은 국민의 문명을 요한다 하여 신교육의 보급을 창도한 자. 6. 海參威 지방으로써 한국인의 국권 회복 단체의 근거지 삼기를 고취한 자. 7. 암살자를 義士라 하여 此 사상의 고취함을 노력한 자. 8. 폭도를 謂하여 국가에 患한 자라 하여 此에 聲援을 與한 자. 이 조항에 의해 『대한매일신보』는 해외에서 반입된 한인신문들과 함께 여러 차례 압수되었다.(「소위 신문지 압수 처분」, 『대한매일신보』 1910.5.14)

БЪЛГАРИЯ И КОРЕЯ, 2012

병력으로써 황실과 정부를 위협하여 오조약을 체결하는데 우리 태황제폐하께옵서 재가하시지 아니 하고 다만 세상이 다 아는 소위 오적놈들만 날장할 뿐인데 이런 무효한 조약을 완전히 성립되었다 칭하고 당당한 우리 대한제국의 국권을 박탈하여 사천년 국가의 이천만 생령이 어육과 도탄을 면치 못하였으니 어찌 분통하지 아니리오³⁸

안중근은 일본이 자신을 심판할 권리가 없음을 논증함으로써 일본이 자신에게 가하는 법률행위 자체를 부정했다. ‘심판받는 자’와 ‘심판하는 자’의 관계설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대한매일신보』는 안중근의 진술을 그대로 노출하는 서술전략을 취함으로써 ‘심판하는 자’의 불법성을 부각시켰다. ‘수인’의 이미지가 제국의 국가폭력을 상상하는 매개물로 고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10 년 8 월, 일본의 한국지배가 본격화 되면서 『대한매일신보』의 사명이 『매일신보』로 변경되고 이 신문에서 제국의 지배를 반대하는 한국인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1910 년대 『매일신보』에서도 공판기의 게재는 계속되었다. 시국사건 공판기로는 「음모사건공판」(1912.11. 28-1913.2.4, 35 회), 「중대사건공판」(1912.6. 30-8.30, 10 회), 「안명근의 공판」(1911.8. 22-23, 2 회), 「폭괴暴魁 이강년의 군사장」(1915.6.25)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³⁹ 그 밖에도 적지 않은 수의 공판 관련 단신이 『매일신보』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들 공판기 속에서 『대한매일신보』가 구성한 ‘수인囚人의 서사’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다. 『매일신보』의 법정은 한국인들을 식민지인으로 규율하는 장소였고 공판기 또한 그러한 시대의

³⁸ 「여순통신」, 『대한매일신보』 국문판, 1910.2.23(잡보/3 면)

³⁹ 이들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대한매일신보』 재판기사와의 구체적인 비교분석은 차후로 미룬다. 1910 년대 재판관련 기록으로는 『매일신보』 자료 외에 *Japan Chronicle* 특과원이 기록한 *The Korean Conspiracy Trial* (1912)이 남아있으며 이 자료는 『105 인사건 공판참관기』(윤경로 역,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분위기에 충실했다.⁴⁰ 식민지인들에게 ‘국가 부재의 사회화’ 시기로 인식된 1910 년대에서 법과 재판소는 제국 권력의 수직구조를 지탱하는 핵심적 제도의 하나였고 공판기의 목적은 바로 그 제도 자체의 위엄과 권위를 재현하는 것에 있었다.⁴¹

3·1 운동 직후 발표된 『매일신보』 공판기도 그러한 1910 년대적 분위기의 연장선에 있었었다. 『매일신보』는 1919 년 4 월, 2 회(17 일, 21 일)에 걸쳐 미국인 선교사 모리 Mowry 의 공판과정을 보도했다. 이 공판기도 국권회복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를 차단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 제국에 저항하는 세력을 사회질서를 해치는 존재로 단죄하고 견책하며 경우에 따라 훈도해야 했던 『매일신보』 공판기의 내용은 ‘수인’의 입장을 대변했던 『대한매일신보』 공판기의 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그러한 서술 특징은 모리 공판기 속에서 명료하게 드러났다. 모리는 평양에서 3·1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자들의 신변을 보호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인데, 그에 대한 공판기의 표제는 ‘위법선교사공판’이었다. 이 표현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모리의 불법성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번 소요가 발생한 이래로 그 내면에 유력한 조력자가 있다는 풍설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탄로된 형편으로서 그 사회에 미치게 한 유형무형한 해독으로 말하면 다시 물을 것도 없는 즉 피고의 행위는 가장 미워할만한 범죄라 말할 것이라. 만일 가령 미국 영토 안에서 이번 조선의 사건과 같은 것이 발생하였을 때에 일본 사람이 그 범죄를 싸고돌았다 하면 미국 관헌은 이것을 모른 체 할 것인가. 또 피고의 믿는

⁴⁰ 권보드래가 편집한 『1910 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제 5 장에 그 일부가 수록되어 자료의 정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⁴¹ ‘국가부재의 사회화’는 연세대 김현주 교수의 「1910 년대 초 『매일신보』에서 ‘사회적인 것’의 생산구조」(『近代知識의成長與媒體』,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復旦大學現代化進程中心 국제학술토론회 논문집, 2009.2.27-28, 上海)에서 시사 받은 표현임을 밝혀둔다.

종교상으로 보아서 피고의 행위는 죄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러할진대 이러한 종교는 **국가를 파괴**(강조-원문)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⁴²

검사의 논고는 모리의 행위가 ‘국가를 파괴’하는 것으로 단정했다. 이 공판기는 3·1 운동의 촉발에 외부의 지원이 있었음을 은연중 암시했다. 그것은 운동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일본 책임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검사의 논고가 기술된 이후 바로 판결문이 이어졌는데 판결문의 내용은 검사의 논고와 유사한 것이었다.

이처럼 3·1 운동 직후 『매일신보』 공판기의 특징은 재판과정에 대한 기자의 독자적 관점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총독부 사법기관의 입장을 부각시키는 것에만 초점이 있었다. 그것은 국가적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매일신보』의 준관보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3·1 운동 공판정이 제국과 식민지인이 투쟁하는 복수의 주체 공간이었지만 그 갈등을 묘사하지 않음으로써 『매일신보』의 3·1 운동 공판기는 식민지 재판정의 성격을 단성화單性化했다.

4. 3·1 운동의 재구성 과 반검열의 수사학

3·1 운동 이후 그 서사자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식민권력은 3·1 운동이 한국의 독립, 한국인의 주권 획득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의미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한국인들은 이른바 ‘불온문서’라는 비합법 수단을 통해 그 부당함을 공격했다.

1919 년 11 월, 이 문제와 관련된 상징적인 사건이 기사화되었다. 대동단 지도자인 전협全協이 정남용鄭南用 등과 함께

⁴² 「위법선교사공판」, 『매일신보』, 1919.4.17

『대동신보大同新報』, 『혁신공보革新公報』, 『자유신종自由晨鐘』 등 3 종의 지하신문을 간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충격을 준 것은 인쇄기계까지 동원하여 『대동신보』 1 만부를 비밀리에 제작, 배포하였다는 점 때문이었다. 불온문서의 배포방식과 분량, 그 범위가 예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⁴³ 그것은 전적으로 3·1 운동이 제공한 에너지에 기초한 것이었다.

『매일신보』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금 춘삼월에 소요가 일어난 후로 조선 각지에는 불온문서를 배포하는 자가 많아 그 종류도 수백 종에 달하며 상해 방면으로부터도 수종의 인쇄물이 와서 인심을 동요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3·1 운동의 영향으로 생산된 막대한 양의 불법문서와 그 통제의 어려움에 대한 식민권력의 우려를 대변했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어 민간지들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한국어 신문의 간행 허용에는 식민지 텍스트의 팽창을 합법성의 범주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어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었다.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줌으로써 한국어 민간지들 스스로 합법성의 경계와 범위를 관리하는 주체가 되도록 유도한 것이다.⁴⁴

신문의 장기적 생존과 반식민성의 표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1920 년대 초기 민간신문들이 안고 있던 모순된 목표였다. 반식민성의 표상이 희미해질 때, 신문사의 운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그것이 과도할 때 신문은 식민권력의 즉각적 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야말로 식민지 민간지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⁴³ 『매일신보』 1919.11.30, ‘불온문서 전부 압수’ ; 신복룡, 『대동단실기』, 양영각, 1982, 69 면.

⁴⁴ 한기형, 「문화정치기 검열정책과 식민지 미디어」, 『근대를 다시 읽는다』, 역사비평사, 2006,

일상적으로 계속된 압수, 발매금지, 정간 등의 행정처분은 민간지 경영자들에게 제국이 부여한 합법성의 영역 안에서만 생존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상기시켰다. 그들의 최대 고민은 합법성의 경계를—그것이 유동적이고 모호할지라도—넘어서지 않으면서 독자 대중의 정치적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에 놓여 있었다.

3·1 운동은 민간신문의 중요한 관심대상이었지만 민간 신문들이 그 자원을 직접 활용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민간지들이 3·1 운동에 대한 발화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판결문과 공판기라는 ‘허용된 수사 형식’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졌다. 『동아일보』에 게재된 3·1 운동 판결문과 공판기는 식민지인의 언론이 식민권력의 질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비트는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였다. 그것은 식민자의 텍스트를 피식민자의 텍스트로 변용하여 제국의 국가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연결되었다.

1920 년 4 월, 창간 직후부터 『동아일보』는 3·1 운동에 대한 판결문과 공판기를 집중적으로 게재했다. 4 월 6 일부터 4 월 18 일까지 총 8 회에 걸쳐 ‘47 인 예심결정서’가 대대적으로 연재되었다. ‘47 인’이라는 표현은 만세운동 지도자를 뜻하는 표현이었다. 이 말의 어의는 『매일신보』의 사용한 ‘손일파’라는 표현과는 매우 다른 내포를 갖고 있었다.

연재되었다. 이 공판기는 피고의 입장을 강조하는 『대한매일신보』의 서술태도로 복귀함으로써 식민지 ‘법정서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동아일보』는 공판정을 강우규를 주인공으로 하는 정치토론장으로 묘사했고 그것은 내셔널리즘의 극적인 확산에 기여했다.⁴⁵

법정에 등장하는 강우규에 대한 묘사는 중세 영웅전의 일절을 방불케 했다. “강우규는 법정에 나타났다. 회색 주의를 입고 얼굴에는 여전히 붉으러한 화기를 가득히 띠었으며 위엄 있는 팔자수염을 쓰다듬으며 서서히 들어오더니 의자에 앉자 허리가 좀 아프니 좀 편안한 의자를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재판장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⁴⁶ 이러한 기사는 ‘간헐 몸’의 존재로 조선 전체를 이미지화하려는 총독부의 의도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설정했다. 강우규의 형상은 수인이라는 그의 상태가 타당한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만들어냈다.

재판장과 강우규 사이에서 이루어진 심문 문답은 강우규가 한 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를 구속한 식민지 실정법의 문제점을 폭로하였다. “피고 생각에 전총독 장곡천長谷川은 십년 동안 조선인을 동화코자 하였으나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보고 조선인은 영원히 동화치 못할 줄 알고 사임을 하였는데 신총독 재등실齋藤實은 세계대세와 민족자결주의를 무시하고 신성한 이천만 동포를 금수와 같이 보는 자이라고 생각하였느냐”라는 판사의 질문에 강우규는 “그리 하였소”라고 답했다. 판사는 다시 “피고는 그 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여 총독을

⁴⁵ 민간지가 공판기를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매일신보』도 민간지 공판기를 추종하여 시국사건의 범인을 관대하게 취급하거나 심지어는 의인시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은 『매일신보』가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상대로 경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현상이었다고 추측된다. 강우규 사건은 그러한 경합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 『매일신보』의 신문자본으로서의 성격과 민간지와의 경쟁에 대해서는 정진석의 『언론조선총독부』(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99-124 면)을 참조할 것.

⁴⁶ 『동아일보』 1920. 4. 15 ‘姜宇奎 控訴公判’

죽여가지고 조선 사람의 뜨거운 정성을 표하고 세계의 동정을 얻고자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강우규는 다시 “그리 하였소“라고 답했다.⁴⁷

이 문답은 마치 총독부 판사가 강우규 행위의 초법적 정당성을 옹호하는 인상을 주었다. 이 문답이 실제로 재판정에서 오고갔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재판장의 발언이든 혹은 기자의 의도적 작문이든 그 사실관계의 규명은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었다. 중요한 점은 그 문답의 내용이 신문에 기재되어 합법언어로써 공중公衆에게 전달되었다는 점 그 자체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범죄의 영역 속에 묶어두려는 식민권력의 노력이 근거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그 봉괴가 다른 아닌 제국 권위의 상징인 총독부 법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법을 통한 지배가 법에 의한 자기 폭로로 귀결되고 있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동아일보』는 그 모순의 틈새를 날카롭게 포착했다.

강우규 공판기가 등장하면서 그 직전 장기간 연재된 ‘47 인 예심결정서’의 사회적 맥락 또한 재구성되었다. 판결문은 공판기와는 달라 민간의 언어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국가언어의 형식이었다. 재판장인 와다나베 노부渡邊暢 이하 다섯 명의 총독부 판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이 문서는 3·1 운동에 대한 총독부의 일차적인 법적 정리를 총괄하는 공식문서였다. 그러나 강우규 공판기와 같은 전복적인 ‘법정서사’의 등장은 판결문의 의미 맥락을 3·1 운동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보의 제공이란 차원으로 전환시켰다.

『동아일보』의 ‘47 인 예심결정서’ 전문 공개의 핵심은 3·1 운동의 전모가 객관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47 인 예심결정서’는 3·1 운동 참가자들의 불법성을 규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운동 지도자들의 성격, 그들의 사회적 이상과 활동 내용, 운동의 진행 상황

⁴⁷ 『동아일보』 1920. 4. 15 ‘姜宇奎 控訴公判’

등을 상세하게 드러냈다. 예컨대 다음 인용문에서 강조된 문장은 3·1 운동 판결문의 의도와는 구별되는 인식 효과를 만들어냈다.

최남선은 동월 상순경부터 빈수(頻數)히 최린과 회합 협의한 후 모두(冒頭)에 ‘조선의 독립국 됨과 조선인의 자주민 됨을 선언하노라’라 계기(揭記)하고 조선의 독립은 시대의 대세에 순응하고 인류 공동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으로 하물(何物)이라도 저지 억제키 불능함으로 차 목적을 성(成)키 무의(無疑)함으로 조선민족은 정당히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독립의 의사를 발표하고 상호 분기하여 제국의 기반(羈絆)을 탈(脫)하여 독립을 기도치 아니치 못할(강조-인용자) 의사로 조현을 문란하고 독립의 시위운동을 도발할 문사를 기재한 선언서를 제국정부, 조선총독부, 귀중양원(貴衆兩院)에 제출할 조선독립에 관한 의견서(하략)⁴⁸

‘47 인 예심결정서’는 최남선의 죄상을 언급하면서 기미독립선언서의 일부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3·1 운동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강화시켰다. 1919 년 3 월 1 일부터 조선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47 인 예심결정서’가 의도하지 않은 답변을 시도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47 인 예심결정서’ 전문공개는 그러한 효과를 의식한 행위였다. 그 결과 3·1 운동 판결문은 의도와 효과가 상치되는 모순된 문서가 되어 버렸다.

수원사건 공판기가 5 월 15 일부터 6 월 1 일까지 3 회에 걸쳐 게재되었고, 그 뒤를 이어 ‘대한청년외교단과 대한애국부인단의 제 1 회 공판방청 속기록’이 6 회(4. 24 일-6. 11)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공판기의 의미가 특별한 것은 시국사건에 대한 민간지 공판기의 완결 형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 성격은 (1) 재판관 혹은 검사와의 문답을 통한 반제운동의 정당성 표출 (2) 원고의 논고 속에 들어 있는 비합리성과 반근대성 폭로 (3) 체포, 구금, 조사

⁴⁸ 「사십칠인 예심결정서」, 『동아일보』 1920.4.8

과정에서 피고가 겪은 고문 등 비인권적 상황 암시 (4) 조선인의 공분을 자극하는 다양한 상황의 세밀한 묘사 등으로 요약된다.

<자료 2. '대한청년회교단과 대한애국부인단의 제 1 회 공판정속기록', 『동아일보』 1920.7.14>



이 공판기는 유광렬柳光烈이 작성했는데, 유광렬은 이와는 별도로 「대구행」(6.18-22, 5 회)이라는 수상문을 같은 신문에 발표했다. 「대구행」은 시국재판 기록을 책임진 기자 개인의 내밀한 정서 변화를 묘사함으로써 공판기가 새로운 차원의 서사로 전화해가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 글 속에는 얼굴에 자상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보고 “그가 전장에 나가서 자가의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리다가 적군에게 맞은 칼자죽인가”라고 상상하거나 “가슴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목은 말라 못 견디겠다”는 표현들이 등장한다. 유광렬은 이글을 통해 사건의 공명자共鳴者로서 자기 존재를 재구성했다. 그러한 시선은 사건의 주인공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여자 피고 중 김마리아(金瑪里亞)와 백신영(白信永)은 병든 몸으로 의자에 기대여 앉아 있다. 더욱 김마리아는 담요로 몸을 두르고 얼굴을 흰 수건으로 가리었는데 내어놓은 두 손은 뻣만 남도록 말랐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여도 그의 뻣만 남은 두 손을 보고 넉넉히 그의 옥중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으며 그의 병이 얼마나 중한 것을 알겠다. 흰 수건 아래로 하얗게 보이는 턱, 축 늘어진 그의 양자를 볼 때에 마치 죽은 사람을 보는 것 같이 불상한 마음이 가슴에 충만하였다. 가슴이 찌르르 하였다. 나의 이때의 느낌은 마치 성모 마리아나 보는 듯이 경건한 태도를 가졌었다.⁴⁹

이러한 동화의 감각이 만들어낸 반성적 사유는 끝내 자기 모멸감의 고백으로 이어졌다. “아아 나의 나이 이미 이십이세! 동포와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었나뇨? 부질없이 밥벌레를 면치 못할 뿐!”⁵⁰ 유광렬의 사례는 식민지의 시국사건이 기억에 대한 새로운 표현양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였음을 보여주었다.⁵¹

1920 년 6 월 29 일부터 7 월 2 일까지 4 회에 걸쳐 대동단사건의 예심결정서가 전문 게재되었다. 그리고 7 월 14 일, 지루한 예심과정이

⁴⁹ 유광렬, 「대구행」(3), 『동아일보』 1920.6.20

⁵⁰ 유광렬, 「대구행」(5), 『동아일보』 1920.6.22

⁵¹ 인용문의 표현이 한편으로는 여성 독립운동자에 대한 남성적 편견이 개입된, 현상에 대한 젠더적 왜곡의 사례로 읽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식민성의 표상을 위한 다양한 수사적 시도 속에 들어 있는 특정 관점의 섬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나고 3·1 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본심 공판이 시작되었다. 그날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전개된 독립운동의 제일막, 조선민족대표 47 인의 공판’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둘째 날(7 월 15 일)은 ‘양교兩敎 동지자의 상호 상응’, 셋째 날(7 월 16 일)은 ‘선언 동기의 진실한 고백’, 넷째 날(7 월 18 일)은 ‘문제가 재연된 공소 불수리’가 그 표제였다.

<자료 3. 「3·1 운동 주동자 본심공판기」(1), 『동아일보』 1920.7.14>



『동아일보』는 3·1 운동 주동자 본심 공판기를 통해 피고인들의 자기 정당성을 스스로 진술하게 하고, 3·1 운동의 촉발과 진행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현을 묘사했으며 주동자들에 대한 법적 처분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암시했다. 핵심적인 사항은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매체와 독자 사이에 3·1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3·1 운동의 법정을 이 운동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이 공판기를 통해 시도된 것이다.

3·1 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본심이 끝난 이후 『동아일보』 공판기의 강도는 한층 높아졌다. 1920 년 8 월, 7 회(22-31 일)에 걸쳐 연재된 연통제聯通制사건 공판기는 ‘법정서사’의 정치적 묘사 수위의 한 극점을

보여주었다. 이 공판기는 사건 연루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문 문답을 기록하면서 피고가 발언한 핵심내용을 굵은 글씨의 표제문으로 뽑아 제시했다.

<자료 4.『연통제사건공판기』(1), 『동아일보』 1920.8.22>



김인서金麟瑞, 조선은 곧 조선인의 조선이니 조선인이 통치함이 당연할 일
박원혁朴元赫, 조선인의 문화와 역사를 무시하고 억지로 동화만
김동식金東湜, 한 물건이 있는 곳에는 다른 물건이 있을 수가 없는 까닭
전재일全在一, 일본은 우리의 의붓아버지니 어찌 친아비를 사모지 않으랴
이운혁李雲赫, 시세가 허락하는 독립은 운동치 안 해도 자연히 될 것
임정발林正發, 조선 사람이 된 이상에야 누가 독립을 원치 않으랴
장천석張天錫, 연통제를 조직하여 내외로 연락하여 운동을 함이 필요
이용현李庸憲, 독립하기는 간절히 원하나 자격이 없어서 운동은 못해
윤태선尹泰善, 조선독립의 의의라 하는 것은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김인서金麟瑞, 윤태선을 상해정부의 대의사로 파견하고자 하는 내용
이규철李揆哲, 이규철은 통역을 꾸짖고 마침내 재판장에게 항거
이규철李揆哲, 나는 오직 강도의 무리에게 잡혀왔다는 말
검사, 연통제는 조헌문란朝憲紊亂, 이와 같은 무리를 박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동식金東湜, 우리들은 적국의 포로이니 맘대로 하라
이운혁李雲赫, 조선 삼천리는 큰 감옥이오, 이천만 민중은 모도다 죄인

표제문 가운데 검사의 발언은 단 한 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들의 주장이었다. 이 표제문은 일제의 한국지배에 대한 직설적 비판을 합법의 지면 위에 쏟아내었다. ‘조선 삼천리는 큰 감옥이요, 이천만 민중은 모도다 죄인’이라는 이운혁의 발언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타당성을 정면에서 부정했다. 그는 한국인이 제국에 순응하지 말 것을 선동했다. 연통제 관련자들의 발언은 『동아일보』가 과연 식민지의 합법매체인가를 의심하게 할 만큼 파격적인 것이었다.

제국의 판결문이 식민지 매체의 하위 언어가 되고, 제국법의 엄중함이 구현되는 공판 기록이 반제국주의자들의 선전장으로 변질되는 현상은 확실히 3·1 운동이 낳은 예상하지 못한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1920년대 초반 민간지의 ‘법정서사’는 ‘제국의 법으로 식민지인의 말이 되게 하라’라는 목표에 충실했다.

이러한 ‘법정서사’의 존재는 식민지에서 불온문서와 합법문서의 차이와 경계에 대한 혼란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식민지 사회에서 불온성이 매우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합법의 형식을 통해 출판물에 대한 식민권력의 간섭과 억압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을 3·1 운동의 ‘법정서사’가 증명한 것이다.

5. 맺는 말

3·1 운동의 ‘법정서사’는 식민지 검열의 역사적 성격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논점을 제공했다. 이러한 형식의 텍스트가 확인됨으로써 식민권력이 검열은 통해 무엇을 감출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증폭되었다. 이것이 식민지 검열정책의 심각한 모순이었다.

검열 주체의 언어와 피검열 주체의 언어가 중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근대언어의 필연적인 환경이었다. 피검열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검열자의 언어맥락을 변형시켰다. 그 때 식민지 검열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3·1 운동의 ‘법정서사’는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제국 법체계의 산물에 대해서

식민지 검열은 그 축각의 예민함을 완화시켰던 것이다. 그러한 정치적 판단의 발생은 식민지 검열이 형식적으로는 법과 행정체계의 산물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국의 복잡한 정치적 위계 속에서 구동되던 자의적인 제도였다는 것을 드러냈다. 검열을 책임지던 법과 행정기구는 그 자체로 완결된 자기 목적성을 지니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식민지의 피검열 주체들은 그 빈 공간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식민지 검열자들이 검열의 대상으로 정의할 수 없는 대상에 집중했고 식민지의 법정을 식민지인의 공론장 속으로 끌어들여 그 의미 맥락을 전환시켰다. 제국의 국가행위를 반식민의 언어로 재구조하는 것, 그것이 식민지 민간지의 판결문과 공판기였다.

판결문과 공판기는 3·1 운동에 대한 식민권력의 단죄를 기록한 자료였다. 그것은 식민권력 자신의 언어이거나 식민권력의 법적 행위에 대한 관찰이므로 3·1 운동에 대한 우호적 기록으로 간주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3·1 운동을 직접 다루면서도 식민지 검열의 대상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번역된 3·1 운동 판결문과 그 재판 과정의 묘사인 공판기가 식민지의 민간 신문에 실리면서 한국인 스스로 작성한 3·1 운동에 대한 합법적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감의 세계를 열었다. 판결문과 공판기에 대한 식민지인의 ‘재맥락화’는 제국의 손으로 제국의 눈을 찌르려는 예리한 반식민 정치 전략이자 피검열 주체의 적극적인 반검열 시도였다.⁵²

⁵² 3·1 운동 ‘법정서사’의 영향과 추이에 대한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신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연재된 각종 시국사건의 공판기와 판결문에 대한 종합적 정리가 필요하다. 그 밖에 『조선지광』 72 호(1827.10)에 발표된 「공산당공판인상기」, 「공산당사건예심결정서」, 「공산당사건 급 공판에 대한 감상」 등도 주목할 만한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Abstract

Han, Kee-hyung

March First Movement: Recapturing 'Trial Narrative'

- A political strategy of anti-colonialism by censored subjects in colonial Korea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at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provided a momentum for active anti-censorship in colonial Korea. Since two private newspapers were established in 1920, a great amount of March 1st Movement related articles including written judgments of the accused became noticeable and impressive contents for the reading public. This media space created by private newspapers which was ostentatiously permitted to communicate Japanese ruling power to the colonial people was inversely taken advantage of propagating unjust rule by Japan. When the written judgments and hearing reports of trials appeared before the reading public, in effect, a semantic conversion was generated.

Producing this sort of 'trial narrative' should be regarded as a main origin of the rhetorical attempt to converse the mechanism of the colonial rule and to re-organize it as a political strategy for resisting Japan. The existence of 'trial narrative' generated by March 1st Movement awakens us that censorship resistance was carried out not only in a passive way such as roundabout expressions evading the censors, but also very active way of metamorphosing the imperial discourse itself. That is to say, re-casting the ruling activities by the colonizer to a language of anti-colonialism by the colonized was what the written judgments and hearing reports of the March 1st Movement trials substantially achieved.

Keywords

March 1st Movement, Trial Narrative, Censored Subjects, Anti-Censorship, Law Unit, Korean Daily News (Daehan Maeil Shinbo), Maeil Shinbo, Dong-a Daily News (Dong-a Ilbo)